제2019 - 8호

제24기 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24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나. 장소: 냉정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- 다. 기 간 : 2019. 3. 6. ~ 3. 8. (09:00~15:00)(기일엄수)
-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(교무실비치)

2. 위워선거

- 가. 선거일시: 2019. 3. 13. (수), 14:00
- 나. 선거장소: 냉정초등학교 본교 체육관
- 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- 라, 당선자 결정 : 종다수제(최다득표제), 단,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
- 마. 학부모 위원 정수 : 5명
- 바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이내로 소견 발표
- 사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9. 3. 11. (월) ~ 3. 12. (화) / 교무실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19년 3월 5일

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